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

2018. 1.

관계기관 합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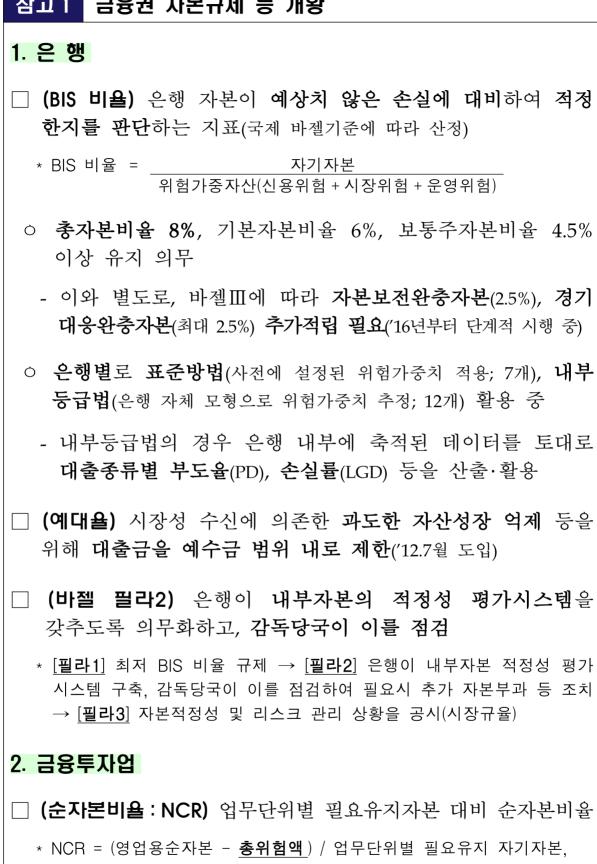
||| 목 차 |||

I . 추진배경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Ⅱ. 최근 금융권 자금흐름 4
Ⅲ. 개선 및 보완필요사항 6
Ⅳ. 기본 추진방향 7
V. 금융업권별 세부과제 ····· 8
1. 은 행 8
2. 금융투자업 16
3. 중소금융 19
4. 보 험
VI. 향후 추진계획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[별첨] 자본규제 등 개편의 영향 추정 (종합) ·········· 23

Ⅰ. 추진배경

- □ 자본규제 등 건전성 규제는 금융회사가 적정자본을 유지하면서, 위험을 판단하고 자금을 중개하는 기준이 되는 유인체계
 - **자본비율**(BIS, NCR 등)을 통해 예상치 못한 손실흡수,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**적정한 자기자본을 유지**할 의무를 부과
 - 예대율, 레버리지 비율 규제 등을 바탕으로 과도한 자산
 증가를 제어하고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관리
- □ 다만, 최근 **가계부채 쏠림현상** 등에 따라 이러한 유인체계가 **제대로 설계되고 또 작동하는지에** 대한 **의문이 제기**
 - * 우리나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'08년 143% → '15년 170%로 27%p 상승(OECD 국가 중 3번째로 빠른 증가추세)
 - 가계대출에 대한 낮은 자본규제 부담은 시중자금을 생산적 분야 보다는 가계·부동산 부문으로 배분되도록 유도
 - 이는 금융권이 스스로 위험 선별기능을 키우기 보다는 주담대 등 '손쉬운 영업'에 안주하는 관행을 심화시킨 측면
 - 경직적인 건전성분류 기준 및 리스크 측정방식 등으로 금융 회사가 기업대출을 취급할 인센티브가 미흡한 부분도 지적
 - ※ 특히, 자본시장에서 **모험자본 투자·중개**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**금융투자** 업자의 자본활용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할 필요성 등도 지속 제기
- □ 아울러, **가계부문으로 과도한 여신 집중**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넘어, **경제 전체적으로 잠재리스크**를 증대시킬 우려
 - 거시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편중 리스크를 적절히 평가하고,
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 등을 위한 규제를 강구할 필요
 - □ 금융을 필요로 하는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자본규제 등 금융 유인체계 전반의 개편 추진

참고 1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황



총위험액 = 시장위험액 + 신용위험액 + 운영위험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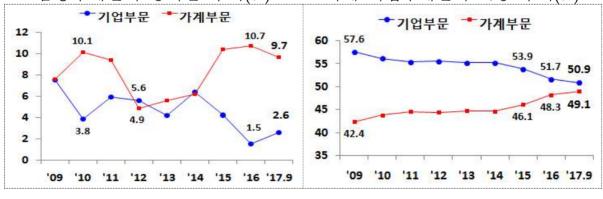
3. 중소금융
<u>< 상호금융 ></u>
□ (순자본비율)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(회계적 자기자본) 비율
○ 환급이 보장되는 출자금은 자기자본에서 차감
* 순자본비율 = <u>(총자산 - 총부채 - 출자금 + 후순위차입금 + 대손충당금)</u> (총자산 + 대손충당금)
□ (예대욜) 과도한 자산성장 억제 등을 위해 예탁금·적금· 출자금에 대한 대출금 비중을 80% 이하로 제한('13.6월 도입)
* 다만, 주담대 분할상환 비율이 20%~30%인 조합은 예대율을 90%, 30% 이상인 조합은 100%까지 허용
<u>< 저축은행 ></u>
□ (BIS 비율) 자본이 예상치 않은 손실에 대비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지표(은행과 달리 신용위험만 평가, 바젤 I 과 유사) * BIS 비율 = 자기자본 / 신용위험가중자산
ㅇ 과거 5% 수준이었으나 자산규모에 따라 7%로 단계적 상향
□ (자산건전성 분류) 은행·보험·금투업권은 차주의 미래 상환 능력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분류하는 FLC 기준 사용, 상호 금융·저축은행은 연체기간 등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분류
4. 보험
□ (지급여력제도: RBC) 보험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, 일정 수준 이상 지급여력(자본)을 보유토록 하는 제도
* RBC = <u>가용자본(예상치 못한 손실발생시 충당할 수 있는 자기자본)</u>

요구자본(보험·신용·시장·금리·운용리스크 규모)

Ⅱ. 최근 금융권 자금흐름

- ◈ '15년 이후 가계·부동산 부문으로 자금쏠림이 심화되고, 담보대출 위주의 보수적 여신관행이 심화(자금중개기능 약화)
- □ 경제 전체적으로 가계부문으로 자금흐름이 지속 확대
 - '08년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문 금융부채잔액*이 기업부문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였으며, '15년부터 증가폭 격차가 심화
 - * '09년~'17.9월중 평균 증가율: 가계부채잔액 8.3% > 기업부채잔액 4.6% (기업부문은 非금융법인, 금융부채잔액은 대출금·채권 기준, 한은 자금순환표)
 - 총 민간신용 중 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 하락

<금융부채잔액 증가율 추이(%)> <가계·기업부채잔액 비중 추이(%)>



- 2 금융업권별로 **은행**, 유형별로는 **주담대가 가계부채 확대를 견인**
 - **(업권별)** 총 가계대출('17.9월, 1,341.2조원)의 **48.1%를 차지**하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'15년 이후 가계부채 규모*가 빠르게 증가
 - * '15년~'16년간 과거 추세(年평균 60조원)를 대폭 상회하여 연 129조원 증가
 -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업권별 가계대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,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은 은행권을 상회

<금융업권별 가계대출 추이 (조원, %; 괄호안은 증가율)>

	′14년	′15년	′16년	′17.9월
은 행	519.6 (8 <i>.0</i>)	563.7 (<i>8.5</i>)	617.4 (<i>9.5</i>)	645.5 (6.9)
 보 험	90.8 (<i>5.1</i>)	98.8 (<i>8.8</i>)	108.4 (<i>9.7</i>)	112.0 (7.6)
저축은행	10.3 (<i>12.0</i>)	13.7 (<i>33.1</i>)	18.3 (<i>33.5</i>)	20.6 (12.6)
상호금융	167.3 (<i>8.8</i>)	182.1 (8.9)	207.7 (14 <i>.1</i>)	215.6 (3.8)

[별첨]

- (유형별) '15년 이후 가계대출 증가분(총 316조원)의 상당부문 (약 189조원, 60%)은 주담대가 차지
 - 은행권을 중심으로 수익성·연체율 관리 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주담대 부분으로 자금공급이 집중
 - * '15년~'17.9월 가계대출 증가분 중 주담대 비중(%) : **은행 82**, 보험 59 등
 - 최근 상호금융업권을 중심으로 집단대출 공급도 확대 추세

③ 기업금융은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담보대출 비중이 확대

- 은행권 기업대출 공급은 가계대출 확대, 기업신용위험 증가 등으로 증가율 둔화세 지속('15년 7.1% → '17.9월 3.5%)
-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 분야로 자금흐름이 증가하고는 있으나, 부동산·임대업을 중심으로 담보대출 공급*이 확대
 - * 은행 중소기업 대출 중 담보대출 비중(%): ('12년) 48.8 → ('17.9월) **57.4** (+8.6)

<은행권 기업-가계대출 증가율(%)> <기업규모별 대출증가 추이(조원)>



④ 혁신·성장부문에 대한 모험자본의 공급·중개 활력도 저하

- 대형 IB의 총자산(5개사, 205.1조원) 중에서 **기업금융 자산*은 17.5조원**(8.6%)으로 **그리 높지 않은 수준**('17.9월말 기준)
 - * 대출채권(대출금·매입대출채권·사모사채), 회사채·기업어음, 주식(출자금 포함), 비연결대상회사 투자지분 등
- 최근 중소·벤처기업에 대한 중기특화 증권사의 직접 투자· 출자규모 및 기업공개(IPO) 실적 등도 다소 주춤
 - * 코스닥 등 IPO실적(억원) : ('16.10월~'17.4월) 1,579 → ('17.4월~10월) 792.5 M&A중개·자문 : ('16.10월~'17.4월) 4건 → ('17.4월~10월) 1건

Ⅲ. 개선 및 보완필요사항

- 금융완화 기조 등 거시경제 여건과 맞물려, 자본규제 등 금융 유인체계가 가계부채 쏠림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
- ① 가계대출의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규제 부담은 금융권이 생산적 분야 보다는 주담대 등 가계금융을 늘리는 원인으로 작용
 - 규제비율(BIS 비율) 관리 등을 위해서는 **제한된 대출여력**을 기업부문 보다는 **안정적인 가계대출로 배분할 유인** 발생
 - * 은행 BIS 비율 산정시 평균 위험가중치('17.9월, %): 가계대출 **25.6** < 기업대출 **66.3**
 - 특히, 비은행금융권의 경우 은행에 비해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리스크가 적정하게 인식되지 못할 우려* 등도 제기
 - * (예) 은행은 고위험 주담대 유형을 세분화하여 별도로 높은 위험가중치 적용 → 저축은행·보험 등은 주담대 유형별 리스크 관리체계가 미흡
- ②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건전성 규제를 넘어, 경제 전체적으로 과도한 자금쏠림 등을 제어할 거시건전성 규제수단이 미흡
 - ※ 가계부채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안정적 자산운용 수단이나, 급격하게 팽창시 거시적으로 소비감소,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하 등 초래 가능("구성의 오류")
 - **특정부문 자산편중에 따른 리스크**를 적절히 측정하여, 이를 **추가 자본적립, 영업규제** 등에 반영할 필요성 제기
- ③ 지나치게 보수적·경직적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으로 기업 금융을 공급할 인센티브가 미흡한 부분도 존재
 - (기업구조조정) 엄격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으로 인해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신규자금 지원 등 구조조정 추진이 어려운 측면
 - ② (동산담보대출) 기계설비 등 유형자산 담보가 '적격담보'로 인정되지 않아 대출위험이 과도하게 인식되는 등 자본규제 측면에서의 애로 존재
 - ③ (대손충당금) 상호금융업권은 여타 업권에 비해 기업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높아 취급유인 저하(요주의 : 상호금융 10% > 은행·저축은행 7%)
 - 특히, 중소·벤처기업에 특화된 **중기특화 증권사**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**건전성 규제부담을 완화할 필요성**도 지적

Ⅳ. 기본 추진방향

◈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회복하고, 생산·혁신적 분야로 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금융 유인체계 전반을 재설계

기본방향

- ① 고위험 주담대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 등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**과도한 가계대출 취급유인 억제**
- ② 가계·부동산 등 특정부문 자산편중위험을 적절히 제어하기 위하여 거시건전성 규제(완충자본 적립), 영업규제 등 도입
- ③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자본규제, 자산건전성 분류, 대손 충당금 적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센티브 강구

<금융업권별 세부과제(요약)>

가계·부동산 부문 리스크 관리 강화

편중리스크 제어 · 관리

기업금융 인센티브 활성화

은 행

- √ 예대율 산정개선
- ✓ 고위험 주담대 추가 자본규제
- ✓ 가계부문 CCyB 도입
- √ 리스크관리실태
 평가(필라2) 개선
- √ 구조조정기업 건전성분류 합리화
- √ 중소기업 신용대출 인센티브 등

등 등자

- √ 부동산 관련 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
- √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정비・확대
- √ 중기특화 증권사 투융자 부담 완화
- √ 코스닥 주식 위험가증치 하향

중소 금융

- ✓ 고위험 주담대 추가 자본규제
- √ 상호금융 집단대출 관리 강화
- √ 상호금융 기업대출 충당금 완화
- √ 저축은행 건전성 기준 합리화

보 험

✓ 고위험 주담대 추가 자본규제 등 ✓ 기업상환능력에 맞춰 위험도 차등

♡. 금융업권별 세부과제

1

은 행

- ① (예대율 산정방식 개선) 예대율 산정시 가계·기업대출간 가중치를 차등화하여, 기업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
- (배경) 당초 예대율은 시장성 수신을 통한 은행의 외형경쟁 유인 억제 등의 정책적 목적을 위해 도입('12.7월)
- ▶ 비대칭적인 현행 자본규제를 보완하여, 과도한 가계부채
 관리 등을 위해 예대율 규제를 보다 실효성있게 개선·운용
- (세부방안)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의 가중치는 상향(+15%) 하고,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하향(△15%) 적용

현 행	개 선	
<u>원화대출금</u> ≤ 100% 원화예수금	(가계대출금 X 1.15) + (기업대출금 X 0.85) 원화예수금	≤ 100%

- (1) 급격한 대출여력 축소 방지, 기업대출 취급유인 제고 등을 위해 가계·기업부문 가중치를 함께 가감 조정(±15%)
 - * 가계부문 가중치만 상향시 대부분 은행 예대율이 100% 초과(평균 104%)
- (2)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가중치 폭은 ±15%로 설정하되, 추후 가계부채 추이 등을 보아가며 조정 검토
- (3) 가계 기업부문간 자금배분 유인구조 개선이 주목적인 만큼, 기업대출이 없는 은행(인터넷전문은행)은 종전 방식 적용
 - * 다만. 인터넷전문은행이 향후 기업대출 영위시 시중은행과 동일방식 적용
- (유예기간) 은행별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, 예수금 조달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여, '18년 하반기 시행(6개월 유예기간 부여)
- '17.9월 기준 시중은행 평균 예대율은 98.1% → 99.6%로 상승, 향후
 조달비용 부담 등에 따라 과도한 가계대출 취급유인 억제 예상

참고 2 예대율 규제 개선시 영향

- ① **(은행별)** 가계·기업대출 가중치 차등적용시, 규제은행 예대율 (′17.9월 96.8%)은 가중치별로 0.5% ∼1.0%p 상승(예상)
 -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**시중은행의 예대율은 전반적으로 상승**, 기업대출이 많은 **지방은행^{*} 예대율은 오히려 하락**
 - * 원화대출 증가액의 60%이상(시중은행 45%)을 중소기업에 지원(한은규정)
 - 가중치 15% 적용시, 1개 은행이 규제비율을 초과하고 시중 은행 전체 평균 예대율이 99.6%까지 상승
 - → 시중은행 예대율이 100%(가중치 ±20%)를 초과할 경우에 대출 자산 위축 우려 등을 감안하여 가중치를 15%로 설정

(단위: 조원, %, %p)

7 8	취하 에디오1)		가·	중치 차등/	니 예대	을 ¹⁾	
구 분	현행 예대율 ¹⁾	±10%	6	±15	%	±209	%
A 은행	98.8	99.1	(+0.3)	99.2	(+0.4)	99.3	(+0.5)
B 은행	98.4	99.4	(+0.9)	99.8	(+1.4)	100.3	(+1.9)
C 은행	92.7	97.4	(+4.7)	99.8	(+7.1)	102.1	(+9.4)
D 은행	98.4	99.2	(+0.7)	99.5	(+1.1)	99.9	(+1.5)
E 은행	99.1	100.2	(+1.2)	100.8	(+1.7)	101.4	(+2.3)
전체 시중은행	98.1	99.1	(+1.0)	99.6	(+1.5)	100.1	(+2.0)
전체 지방은행	96.3	93.6	(△2.8)	92.2	(△4.2)	90.8	(△5.6)
전체 규제은행	96.8	97.3	(+0.5)	97.5	(+0.7)	97.8	(+1.0)

- 1) 예대율 산정시 제외되는 정책자금대출, 새희망홀씨대출 등은 제외
- ② (시장영향) 예대율 상승으로 예수금 조달이 증가하더라도, 시장금리가 급격히 변동할 우려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
 - 시중은행이 대출금 감소없이, 현재 예대율(98.1%) 유지를 위하여 추가 조달해야 하는 예수금은 약 11조원 규모
 - **총예수**금(약 856조원)의 **약 1.3% 수준**으로, 유예기간 등을 고려시 **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** 것으로 예상
 - 과거에도 예대율 시행('12.7월)에 앞서 **예수금이 다소 증가** 했으나, **예금금리는 큰 변동없이 기준금리 추세와 동행**

	′11.1분기	'11.2분기	'11.3분기	′11.4분기	′12.1분기	′12.2분기
예수금 증가(조원)	18.7	9.6	19.3	22.4	8.4	11.2
수신-기준금리차	0.67	0.45	0.46	0.52	0.47	0.38

참고 3 바젤3 규제 도입에 따른 예대율 운용방향

1. 주요이슈 (TF 논의사항)

- □ 금년 도입될 바젤3 유동성 규제인 **'순안정자금조달비율**^{*} (NSFR)'이 **현행 예대율 규제와 중복**된다는 지적 등이 제기
 - * Net Stable Funding Ratio = 가용안정자금(부채·자본)/필요안정자금(자산)
 → 장기간(1년 이상) 필요한 자금에 대비하여 장기간 안정적 자금을 보유토록 유도하는 중장기 유동성비율
- □ 다만, 자금조달의 질적 측면 관리, 대출증가 억제효과 등 정책적 측면을 감안할 때, 예대율 규제는 여전히 유효
 - ① 당초 예대율은 은행의 유동성 관리 뿐만 아니라, **과도한** 가계부채 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
 - ② 예대율은 NSFR과 달리 시장성수신(CD, 은행채 등)을 자금 조달 부문에서 제외하는 등 자금의 질적 측면도 중시
 - * 반면, NSFR은 잔존만기 1년 이상 부채는 시장성수신도 가용안정자금으로 인정
- **❸** 예대율 규제준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측면 등도 감안할 필요(→ 위반시 직접제재가 아니라 공시, 개선계획 제출)

2. 향후 운용방향

- □ NSFR 도입시에도 시장성수신에 기반한 가계부채 억제 등을 위한 보완적 규제로서 예대율을 개선·병행 운용
 - 아울러, 규제부담 경감 등을 위해 은행권 의견*도 적극 반영
 - * (은행권 의견) 기업대출 가중치는 하향 적용, 가계대출만 영위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적용 제외, 예대율 산정방식 변경 前 유예기간 부여 등
- □ 향후 시장상황 등을 보아가며, 예대율 규제를 **유동성 규제**의 참고지표로 활용하는 방안* 등도 중장기적으로 검토
 - * (예) 예대율을 경영지도비율에서 제외하고 경영실태평가에만 반영·점검 등

- ② (고위험 주담대 위험관리강화) LTV가 과도하게 높은 일부 주담대의 리스크를 적정하게 인식·반영(위험가중치 상향)
- (현행) 가계부채 구조개선 등을 위해 '고위험 주담대*'에 대해 BIS비율 산정시 높은 위험가중치 적용 중
 - * (i) 만기일시상환 대출, 거치식 분할상환 대출, 3건 이상 다주택 담보대출자(RW 50%), (ii) 만기시 원금상환 10% 미만 대출(RW 70%) > 일반 주담대 RW 35%
- (추가) 주택가격 하락의 잠재리스크 등을 고려하여, 'LTV 60% 초과 주담대'의 위험가중치도 상향(예:35% → 70%)
 - 다만, 은행별 BIS 비율 하락 등의 영향을 감안하여, 위험 가중치를 단계적으로 조정(예: 2년)하는 보완방안 등 검토
 - ※ 한편, 최근 증가세가 높은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 대출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'여신심사 가이드라인' 마련('18.1분기) 추진
- ☞ 고위험 주담대에 대한 **자본규제 부담을 적정화**하여, **개별은행 차원**에서 **주담대 리스크 관리 강화** 유도
 - * 위험가중치 상향시, 은행권 **평균 BIS비율**은 **최대 약 0.14%p 하락**(추정)
- ③ (가계부문 편중리스크 감독강화) 금감원의 은행 리스크 관리 실태평가(필라2)에 가계부문 편중리스크 평가항목을 신설
- ① (계량항목)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(규모·속도)에 따른 리스크가 적정하게 평가되도록 '가계신용 리스크*'를 항목에 추가
 - * (예) 신용리스크 부문(평점 50% 배정)에 '익스포저 대비 가계신용 리스크량 비율' 항목을 추가하고, 별도 평점(예:5%) 부여
- ② (비계량항목) 가계대출의 성장속도 및 편중도 등에 대한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실태*를 비계량 지표로 추가
 - * (예) 가계대출에 대한 별도 관리절차 마련 및 상시 모니터링 수행, 가계 대출 증가에 대한 적정한 관리, 가계대출 편중도 관리수행 여부 등
- ➡ 평가결과, 가계신용 리스크가 과도하거나 관리실태가 미흡한은행에 대해서는 개선계획 제출, MOU 체결 등 조치

참고 4 필라2 리스크 평가항목 조정방안 (예시)

7 14	리스크	현 행		개선(안)	
구분	유형	계량지표	비중	계량지표	비중
	종합	■리스크중심 자기자본비율 ■위험조정자본이익률	15%	(좌 동)	15%
	신용	■ 익스포저 대비 신용리스크량비율 ■ 자기자본 대비 신용리스크량비율 ■ 장외파생상품 위험가중자산비율	50%	(좌 동)	50%
		044000 HB/10/10-12		■(추가) 익스포저 대비 가계 신용리스크량비율	(5%)
계	시장	■ 자기자본 대비 시장리스크량비율	5%		5%
량	운영	■ 자기자본 대비 운영리스크량 비율	7%		7%
항 목	유동성	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유동성비율원화예대율중장기외화자금 조달비율	10%	(좌 동)	10%
	금리	■ 자기자본 대비 금리 EaR 비율 ■ 자기자본 대비 금리 VaR 비율	7%		7%
	신용	■ 자기자본 대비 신용편중리스크 비율(차주, 계열, 산업, 담보)	60/	(좌 동)	6%
	편중		6%	■(추가) 자기자본 대비 가계 부문 편중리스크 비율	(3%)
비 계 량	신용 리스크 모니터링 적정성	■신용리스크 모니터링 항목 및 보고내용의 적정성 여부 점검 - 고위험자산 및 편중자산에 대해 별도의 관리절차를 마련하고,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는지	-	■(추가) 가계부문 대출에 대한 별도의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는지	-
항	신용 포트	■ 신용포트폴리오 관리절차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점검		■(추가) 가계부문 대출 증가가 적정수준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	
목 	폴리오의 적정성	- 포트폴리오가 은행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등	-	■(추가) 가계부문의 대출 편중도 관리를 적정히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	-

- 4 (가계부문 경기대웅완충자본 도입) 과도한 가계대출 팽창에 대하여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(거시건전성 규제 도입)
- (개요) 가계부문의 과도한 신용팽창으로 인한 시스템리스크 억제 등을 위해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* 도입
 - ※ 가계신용을 포함하여 금융시스템에 노출된 **총신용**을 대상으로 하는 **경기대응 완충자본(C**ounter**cy**clical Capital **B**uffer, 바젤3 규제)은 '15년말 이미 도입
 - 가계신용 팽창기에 추가 자본을 적립토록 하여, 가계부문 신용공급량을 조절하고 은행시스템의 복원력을 제고
 - ※ [해외사례] '13.2월, 스위스는 주담대 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·운영 중
- (세부방안) 적립판단지표,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가 '적립비율' 결정 후, 은행별로 가계신용 비중에 따라 적립
 - * (예) 금융위가 가계대출에 **1%** 적립비율 결정 → 가계신용(익스포저) 비중이 50%인 은행의 경우 **0.5%**(1% X 0.5) 추가 자본적립(보통주) 의무 발생
- ※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(Sectoral CCyB) 도입안 (예시)
- (적립판단지표) 'GDP 대비 가계신용갭'을 주지표로 사용하고,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갭, GDP 대비 주택가격갭 등을 보완지표로 활용
- ② (적립비율 결정) 바젤위원회 산출방식에 따라 적립판단지표, 거시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금융위가 0%~2.5% 범위 내에서 결정
- (은행별 적립비율) 금융위가 정한 적립비율에 개별은행별 가계부문 신용 비중(익스포저)을 곱하여 최종 추가 적립비율(보통주) 산출
- ④ (적립시기) 매분기별 평가를 통해 적립결정시,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준비기간 부여
- (미충족시 조치) 경기대응완충자본과 마찬가지로 이익배당,
 자사주 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 지급제한 등 조치
- (시행시기) 판단지표 시뮬레이션 등 세부 모형설계를 거쳐 '19년부터 도입·시행(과거 CCyB 도입시에도 약 1년간 준비)
- ☞ 개별은행 차원의 자본규제를 보완하여, **거시 경제적으로 가계** 부채 쏠림현상('구성의 오류')에 따른 잠재리스크를 제어·관리
 - * 최대 적립비율(2.5%) 가정시, **시중은행별 0.8%~1.2%p의 추가 자본적립**(추정)

참고 5 스위스의 주담대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사례

1. 도입경과

- □ '13.2월, 스위스는 **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**되는 **부문별 경기** 대응완충자본(Sectoral CCyB) 제도를 시행
 - 시행배경으로 모기지 대출증가, 주택가격 상승이 은행 건전성과 경제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우려 등을 언급*
 - * 다만, '80년대 주택버블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초기 적립비율을 **1%**로 설정('13.12월, Federal Council 보도자료)
 - '14.1월, 저금리 기조, 은행의 위험선호 강화 등으로 모기지
 시장과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지속 → 은행시스템 복원력 강화 등을 위해 적립비율을 2%로 상향

2. 평 가

- □ 스위스 주담대 부문 CCyB는 **주담대 증가속도 관리, 은행** 시스템의 복원력 개선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
 - (양적 측면) 저금리 기조 등으로 주담대 규모는 지속 증가 하였으나, CCyB 시행 이후 주담대 증가세는 둔화

<스위스 주담대 추이 (단위: 백만CHF, %; Swiss National Bank) >

	′11년	′12년	′13년	′14년	′15년	′16년
주담대 규모	809.7	847.9	884.0	918.6	943.3	967.5
증 가율 (YoY)	5.51	4.76	4.26	3.91	2.69	2.57

- (질적 측면) 바젤*에 따르면, 주담대 CCyB 도입으로 신용 공급자 구성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
 - * Higher Bank Capital Requirements and Mortgage Pricing: Evidence from the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(CCB), BIS working paper 511
 - **자본비용 감내 여력이 높은 은행**(자본건전성이 높거나 주담대 익스포저가 낮은 은행) 중심으로 **신용공급자 구성**이 변화^{*} → **은행시스템의 복원력 제고에 기여**한 것으로 분석
 - * 주담대 CCyB 도입 이후, 자본여력이 취약한 은행은 평균 2.72bp 금리를 고객에게 전가, 자본건전성이 높은 은행은 평균 0.49bp 전가

- 5 (기업금융 유인체계 개선) 과도한 자본규제,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강구
- ① (중소기업 신용대출) 담보·보증대출에 편향된 중소기업 대출 관행 개선 등을 위해 신용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
 - 경영실태평가시, 경영관리 부문에 '중소기업 신용대출 지원 실적' 항목을 신설하고, 별도의 평가 가중치(예:5%) 신설
- ② (기업구조조정)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하여 신규 자금지원 등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
 - (1) 워크아웃기업 등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법적 우선변제권이 부여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, 기존대출 보다 자산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수 있는 근거* 마련
 - * 기업에 대한 다른 여신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
 - (2) **채권은행**이 채무재조정 이후, 사업전망 등을 토대로 자율적으로 **대상기업의 건전성 분류를 조정**할 수 있도록 유도
 - * (예) 대상기업에 대한 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등 점검시, 미래 채무상환 능력. 경영정상화 가능성 등에 관한 채권은행 의견을 충분히 수렴·반영
- ❸ (동산담보대출) 중소기업 자금조달수단 확대 차원에서 기계 설비 담보대출*에 대한 자본규제 부담완화 강구
 - * 전체 동산담보대출(약 2,300억원) 중 기계설비 담보대출이 80% 이상 차지
 - '기계거래소' 등을 통해 가격평가 및 처분이 용이한 일부 범용기계를 '적격담보*'로 인정하는 방안 등 검토
 - * 현재 기계설비는 적격담보로 인정되지 않아 신용위험을 경감받지 못하므로 BIS 비율 및 대출금리 산출시 은행과 기업에 불이익 발생 가능
 - ※ **동산담보대출 활성화**를 위한 제반 인프라(평가·회수 등) 구축도 병행
- ④ (기업외화대출) 국내기업(본사)이 보증한 해외지점·법인 외화대출시, 본사의 국내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
 - * [**현행**] 보증을 제공한 국내본사의 **원화표시 신용등급** 활용이 제한되어, 위험 가중치가 과도하게 산정(無등급, 100%) →[**개선**] 본사 신용등급 활용(예: AA, 20%)

2 금융투자업

- ① (모험자본 역할 강화) 중기특화 증권사 등의 생산·혁신적 분야 자금공급에 대한 건전성 규제(NCR) 합리화
- (중기특화 중권사) 중소·벤처기업에 대한 투·융자시 자본 규제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위험액 산정의 특례를 인정
 - (1) **투자** : 중소·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**장기 투자**시, **주식집중** 보유에 따른 위험액 가산*을 면제
 - * [현행] 증권회사가 기업 지분을 5% 초과하여 보유할 경우, 개별위험값(4% ~20%)의 일정 비율(50%~200%)을 추가로 가산
 - (2) **융자** : 중소·벤처기업 등에 대한 신용공여시, 대출자산의 위험수준에 따라 건전성 부담이 차등화되도록 개선
 - * [현행] 대출채권은 영업용순자본에서 대출채권 전액 차감 → [개선] 영업용 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용위험액(위험값 0%~32%)에 반영
- ② (전체 중권회사) 현재 코넥스와 동일하게 위험도가 인식되는 코스닥 주식투자*에 대하여 위험가중치 하향 조정
 - * [**현행**] 개별위험값 6%~12% 적용(코넥스 동일) → [**개선**] 5%~10%
- ③ (상장주관사) 테슬라 요건을 활용함에 따라 부담하는 환매 청구권(풋백옵션)*에 대해 주식시장 위험액 산정을 면제**
 - * 상장주관사가 테슬라 요건 활용시, 일정기간(1~6개월) 일반청약자에 대해 청약자가 요구할 경우 공모가의 90% 이상으로 매수하는 풋백옵션 부여
 - ** 영업용순자본 비율 산정시 위험값 산정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
- ☞ 증권회사의 중소·벤처기업 자금지원에 대한 건전성 부담 완화로 생산적 분야(중소·벤처, 코스닥)로의 자금공급 원활화 기대

- ② (부동산 분야 건전성관리 강화)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의 부동산 관련 대출·집합투자증권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
- 1 (부동산 대출) 종투사 대출이 부동산에 집중될 경우 증가되는 리스크를 반영하여 위험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마련
 - * [현행]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적용(0%~32%) → [개선] 장기 부동산 대출(PF 등)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추가로 가산
- ② (부동산 집합투자증권) 유동성 측면에서 부동산 직접 보유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집합투자증권*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
 - * (예) 사모펀드로서 단기간 內 매각·환매 가능성이 없는 부동산펀드 등
 - ※ 현재 부동산 직접 보유시 유동성없는 자산으로 보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하나, 집합투자증권으로 보유시 24%까지 위험값을 낮출 수 있어 규제차익 발생
- ☞ **증권회사의 부동산 분야 투자 쏠림현상 완화 유도**(다만, NCR 하락^{*} 등의 영향을 감안하여 **유예기간 부여 등 보완방안 검토**)
 - * 부동산 집합투자증권을 전액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할 경우, 종합금융투자 사업자의 평균 순자본비율(NCR)이 220%p 하락(추정)
- ③ (편중리스크 관리강화)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동일인 신용 공여 한도제도를 정비하고, 일반 증권사까지 적용 확대
- ① (종합금융투자사업자) 동일인 신용공여한도(자기자본의 25%) 산정시, 현행 대출·어음할인 뿐 아니라 '채무보증'도 추가
 - ※ 은행, 보험, 저축은행 등 여타 금융권의 경우,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산정시 채무보증도 이미 포함
- ② (일반 중권회사) 부동산 편중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종합금융 투자사업자에 준하여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제도 도입
 - 참고로, 현재 증권사의 **채무보증 총잔액**(26.3조원) 중 **부동산 관련 채무보증이 약 17.5조원**(66.5%)으로 적지 않은 수준

참고 6 그간 금융투자업 건전성 규제 개편 추진경과

- ◆ 그간 NCR 규제가 **과도한 유휴자본 보유를 강제**한다는 지적 등에 따라 **금투분야 건전성규제 지속 개편**(′14~′17년)
- ① (新NCR 도입) NCR 산식을 변경하여 자금공급 규모가 증가 해도 과도한 유휴자본 보유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
 - * [기존] 영업용순자본 / 총위험액 : 권고 < 150%, 요구 < 125%, 명령 < 100% → [개선] (영업용순자본 - 총위험액) / 필요유지자기자본 : 권고 < 100%, 요구 < 50%, 명령 < 0%
 - 다만, 레버리지 규제를 신설하여 과도한 차입을 통해 자산규모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
 - * 총자산 / 자기자본 < 1,100%(경영개선권고); 1,300%(경영개선요구)
- ② (종합금융투자사업자 별도 NCR 적용) 기업대출이 허용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실질적 대출 운용이 가능 하도록 건전성 규제상 제약을 대폭 완화
 - * [기존] 만기 3개월 이상 대출은 무조건 자기자본에서 차감(위험가중치 100%)→ [개선] 모든 형태의 대출채권은 만기에 관계없이 신용도에 따라서 위험 가중치 적용(AAA 등급의 경우 0~2.4%)
- ③ (KOSDAQ150 유동성인정지수 추가) KOSPI100, KOSPI200 이외에 KOSDAQ150을 유동성인정지수로 추가하여 코스닥 주식 투자부담을 완화*
 - * (개별위험값 하향효과) KOSDAQ150 지수 및 동 지수 기초 ETF: 4% → 1% KOSDAQ150 구성종목: 12% → 6%
- ④ (유동화증권 위험액 산정 개선) 유동화증권의 발행 주선 및 판매, 투자 등을 주로 하는 증권사의 영업특성을 고려하여 유동화증권 위험액 산정방식을 합리화*
 - * [기존] 만기와 관계없이 신용등급에 따라 1.6%~18% 위험값 적용 → [개선] 만기별로 세분화하여 신용등급/만기에 따라 0.5%~18% 적용

3 중소금융

- ① (**상호금융 집단대출 관리강화**) 집단대출 편중위험 관리 등을 위해 집단대출 취급에 대한 중앙회의 관리 강화
- (배경) 상호금융권별로 자율적으로 집단대출을 관리^{*}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집단대출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
 - * 조합별 집단대출한도: (농협) 전월말 대출잔액의 20%, (신협) 전월말 대출잔액의 10%, (수협) 전년말 대출잔액의 10%
- (세부방안) 집단대출 편중을 완화하고 자금을 생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회 자율로 운영하던 집단대출 관리를 체계화
 - 각 조합의 집단대출 취급 前 중앙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화
- ② (상호금융 기업대출 유인체계 개선) 은행·저축은행 등 여타 업권에 비해 과도한 기업대출 충당금 부담을 합리화
- (대상) 여신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경기민감업종(부동산·건설· 도소매 등)에 속하지 않는 법인대출에 한하여 적용
 - *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, 최근 증가세가 가파르고 가계대출과 구분이 명확치 않은 등으로 가계대출 규제 회피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제외
- (적립기준) 정상 1%→0.85%, 요주의 10%→7%, 회수의문 55%→50%
 <금융업권별 대손충당금 적립률 비교>

		상호금융			
구 분	현행	개선(안)		은행 및 저축은행	
	가계·기업대출	가계대출	기업대출	가계대출	기업대출
정상	1%	1%	0.85%	1%	0.85%
요주의	10%	10%	7%	10%	7%
회수의문	55%	55%	50%	55%	50%

☞ **상호금융업권 충당금 부담감소**(약 △400억원), **기업대출 유인증가** 기대

- ③ (저축은행 건전성규제 개선) 고위험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상향하고, 기업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합리화
- (고위험 주담대) 고위험 주담대(LTV 60% 초과, 만기시 원금상환 10% 미만) 위험가중치를 은행권에 준해 상향(예 : 70%)
 - * [현행] 바젤 I 적용으로 낮은 위험가중치 적용(전액 1순위 저당권 35%, 그 외 50%) → [개선] 주담대 리스크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과도한 확대유인 관리
- ② (기업대출 건전성 분류) '18년부터 시행된 충당금 적립부담 강화*에 따라, 중소기업 대출 등이 급격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여타 업권과 비교하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합리화
 - * [요주의 충당금 적립률] <u>현행 2%</u> → ('18년) 4% → ('19년) 5% → ('20년) 7%,
 - (1) 은행 등 다른 금융권과 공동으로 취급한 동순위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주간사와 동일하게 자산건전성을 분류토록 허용
 - (2) 요주의 분류사유 중 '부실징후 기업여신' 관련 사유 합리화
 - 상호금융업권과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**부실징후 예시** 중 '**차입금 과다***' 관련 사항 정비
 - * [현행] 금융회사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 초과시 → [개선] 금융회사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 초과 + 최근 2년 연속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에 미달시
 - 부실징후 분류 후 정상 분류가 가능한 기업여신 범위 조정
 - * [**현행**] 정상적으로 2년 이상 거래한 여신은 '정상' 분류 가능 → [**개선**] 동 기간을 **1년으로 단축**
- 4 (여전사 레버리지규제 합리화) 캐피탈사가 중소기업 대상 온렌딩대출(정책자금)을 적극 취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
- 캐피탈사 레버리지비율(10배) 산정시, 총자산에서 온렌딩대출*은 제외하여 벤처·혁신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유도
 - * '17년 전체 온렌딩 자금(6.3조원) 중 2,700억원이 8개 여전사에 배정

4 보험

- ① (가계대출 위험관리체계 전면정비) 은행권에 준하여 고위험 주담대, 신용대출, 연체자산 등에 대한 위험계수 조정
- **1** (고위험 주담대) 고위험 주담대(LTV 60% 초과, 만기시 원금상환 10% 미만) 위험계수를 은행권에 준해 상향(예 : 2.8% → 5.6%)
 - * 만기일시상환, 3건 이상 담보대출자 등은 은행권에 준해 위험계수를 이미 상향 적용 중
 - ** 보험사 재무건전성 영향 및 실무준비를 고려하여 단계적 반영(예: 2년) 등 검토
- ② (신용대출)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반영하여, 위험계수를 '고위험 주담대' 보다 높은 (현행 4.5%→) 6% 수준으로 설정
- ③ (연체자산) 주담대·신용대출 위험계수 조정 등과 연계하여, 연체자산에 대한 위험계수도 전반적으로 상향
 - * (예) 연체 신용대출(대손충당금 적립비율 20% 이상) 위험계수: 현행 6%→8%
- □ 시장충격은 최소화*하면서, 가계대출의 과도한 증가억제 효과 기대
 ★ 보험사별 RBC 비율은 평균 △1%~△4%p 하락(추정)
- ② (기업대출 리스크 평가 정교화) 차주의 담보능력 外 원리금 상환능력을 추가로 반영하여 기업대출 리스크를 평가
- (현행) 기업대출을 하는 경우, 차주의 담보능력(LTV 50% 이하부문)만 신용리스크 경감에 반영
 - * [위험계수] LTV 50% 이하 부문 : 6% → LTV 50% 초과분 : 최대 9%
- (개선) LTV 비율과 함께 차주의 상환능력(DSCR*)도 감안하여,
 DSCR이 1.4 초과시 위험계수를 (6%→) 4.5%로 추가하향 적용
 - * (DSCR) 특정기간 동안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

DSCR (부채상환비율, Debt Service Coverage Ratio) = 원리금 상환에 이용될 수 있는 현금흐름 해당기간의 원리금 상환액

- 아울러, 신용위험 경감 LTV 부문도 (50%→) 60% 이하로 확대

Ⅵ. 향후 추진계획

- ① 대부분 세부과제가 **업권별 감독규정** 등 **하위규정 개정**만으로 가능한 만큼, 방안 발표 후 **속도감있게 후속조치 추진**
 - 다만, 규정개정 과정에서 시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, 유예
 기간 부여 등 보완장치도 충분히 검토
 - ※ 금번 방안에 이어, 혁신모험펀드 조성,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, 동산담보·기술금융 활성화 등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정책노력 지속

<세부과제별 추진일정(안)>

구 분	세부과제	요조치사항	개정추진		
	① 예대율 산정방식 개선 ¹⁾	감독규정 개정	′18.1분기		
	② 고위험 주담대 RW 상향 ²⁾	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	′18.1분기		
	③ 리스크 관리평가(필라2) 개선3)	실득합무시생세식 개정	′18.下		
은 행	④ 가계부문 CCyB 도입 ³⁾	감독규정 개정	′18.下		
	 5 기업금융 유인체계 개선 · 중소기업 신용대출 인센티브 · 기업구조조정 자산건전성 분류 ·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· 기업외화대출 부담 완화 	검사매뉴얼 개정 감독규정 개정 가이드라인 개정 등	′18.1분기		
	① 모험자본 역할 강화	감독규정 개정	/10 1 ㅂ 기		
금융 투자	② 부동산 분야 건전성관리 강화 ²⁾	가독업무시행세칙 개정 '18.1분'			
	③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정비·확대	자본시장법 개정안 제출	′18.上		
	Ⅱ 상호금융 집단대출 관리 강화	감독규정 개정			
중소	② 상호금융 기업대출 유인제고	671107110	′18.1분기		
금융	③ 저축은행 건전성규제 개선 ²⁾	감독규정 개정	10.1 亿 /		
	④ 여전사 레버리지규제 합리화	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			
보험	□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강화²)	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	'18 1부기		
	② 기업대출 리스크 평가 정교화	<u>а д н / т б/ш д / ш б</u>	10.1 正 /		

¹⁾ 유예기간(예:6개월) 부여 검토, 2) 단계적·점진적 시행방안 검토

³⁾ 세부모형 설계 및 시뮬레이션 등 관계기관 협업 후 규정개정 추진

[별첨] 자본규제 등 개편의 영향 추정(종합)

- ◆ 금융업권별 자본규제 비율(BIS, NCR, RBC 비율 등)은 급격한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는 수준에서 다소 하락
- ◈ 계량화 가능 범위 내에서 중장기적으로 최대 40조원 내외의 가계부문 대출 감축 유인효과 발생 추정

